



정보공개서

스터디카페 포커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카페 포커스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1134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6.0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31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사업본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34, 204호(트라움하임)

대표번호

1899-4206

이메일

focus_studycafe@naver.com

팩스번호

0504-057-8238

홈페이지

www.focusstudycafe.co.kr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1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3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4

I**가맹본부의 일반현황****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포커스	스터디카페 포커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34, 204호(트라움하임)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1.07.29	김은진	1899-4206	0504-057-8238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27-11-01756

2.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은진 /포커스	스터디카페 포커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34, 204호(트라움하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은진	1899-4206	0504-057-823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보람 /포커스	스터디카페 포커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34, 204호(트라움하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은진	1899-4206	0504-057-8238

3.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스터디카페 포커스	-
상 호	스터디카페 포커스 OO점	보통 해당 지역명으로 표시
상표(서비스표)	포커스스터디카페	출원번호: 40-2019-0191363 등록번호: 40-1686-4590000
그 밖의 영업표지	 스터디카페 포커스 몰입을 경험하는 프리미엄 학습공간	상표 등록일: 2021.01.26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607	2,214	9,393	172,682	15,211	15,213
2022년	39,968	34,812	5,156	223,914	14,242	14,855
2023년	87,149	47,552	39,597	436,909	26,463	25,226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상호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은진	2020.02.01. ~ 2021.08.20.	포커스	본부장	마케팅 및 대외업무 총괄
		2021.08.21. ~ 현재	포커스	대표자	가맹사업 총괄
	김보람	2020.02.01. ~ 현재	포커스	부대표	운영부문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직전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스테디카페 포커스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권자	존속기간 만료일
포커스 스테디카페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 2019.12.10. 등록일: 2021.01.26	출원번호: 40-2019-0191363 등록번호: 40-1686459-0000	포커스 김은진	2029.12.10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사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0.02.01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포커스	스터디카페 포커스	김규현	2020.02.01. ~ 2021.08.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31, 3층(송천동2가)
포커스	스터디카페 포커스	김은진	2021.08.21. ~ 현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34, 204호(트라움하임)

3. [스터디카페 포커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터디카페 포커스	기타서비스	스터디카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스터디카페 포커스]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	17	1	21	18	3	22	19	3
서울	-	-	-	-	-	-	-	-	-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11	11	-	11	11	-	11	11	-
전남	2	2	-	2	2	-	3	3	-
경북	-	-	-	1	-	1	1	-	1
경남	3	2	1	5	3	2	5	3	2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11	6	-	-	1	17
2022년	17	1	-	-	1	18
2023년	18	1	-	-	1	19

6. [스터디카페 포커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스터디카페 포커스]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평균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9	103,334	1,206	163,876	1,853	61,519	668	-
서울	-	해당없음	-	-	-	-	-	-
부산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
전북	11	95,325	917	123,555	1,144	67,187	668	6곳 산출
전남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
경남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POS데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 당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당사의 가맹점 중 최초 1호점부터 5호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영업일이 1년이 안되는 가맹점은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사유로 인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없는 가맹점(전북 내 5개 가맹점)은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9개가 아닌 실제 14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직전연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3년	19	112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3년에 광고 및 판촉에 사용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VAT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3492	-	-	-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판촉	-	-	-	-	-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지점	전화번호
신한은행	전지점 및 온라인뱅킹	1599-8000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은행지점 방문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수령(가맹계약서 별첨) → ② 은행에 방문하여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③ 가맹금예치증서 수령 및 보관
인터넷뱅킹 이용시	④인터넷뱅킹 접속 후 로그인 → ② 부가서비스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 가맹점사업자 클릭 → ③ 가맹본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④ 가맹본부 확인 → ⑤ 가맹점사업자 정보 입력 및 예치금액 입력 → ⑥ 가맹금 예치완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예치 대상 여부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330	예치	계약체결일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성격의 금전
개점 전 교육비	220	예치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550	-	-	-	-

2)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예치 대상 여부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보증금	300	예치	계약체결일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총계	300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만원)	
	신규 가입자	양수인
가맹비	330 (부가세 포함)	IV3-3)가맹점 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참고
교육비	220 (부가세 포함)	
보증금	300 (부가세 없음)	
합계	85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만원 / 부가세별도 / 60py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198㎡기준 (60평)	3.3㎡당 금액		
인테리어 (가구 및 비품포함)	(협력업체)	13,800	230	계약서에 따름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키오스크 (POS포함)	(협력업체)	1,200	-		
홍보비 (간판 포함)	가맹본부	500	-		
총계		15,500	-		

① 위 표의 인테리어 항목에는 스타디카페 포커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설비(현장 맞춤제작 가구, 의자, 24시 공기 순환 시스템, 방음 및 백색소음, 커피머신 및 대용량 제빙기, 커튼, 인테리어 소품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시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위 표의 품목 외에 귀하가 선택하여 부가수익시설인 자판기, 사물함, 안마의자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후, 일부 품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⑤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철거, 소방설비, 전기증설, 냉/난방, 화장실, 테라스 공사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 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상주인구 밀집도,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예상 매출액 파악,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점포의 입지선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기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본사의 경영마인드에 부합하고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근면 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가질 것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기 내역은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가맹점 실측 후 계약 체결시 별

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키오스크 서버 문자알림 서비스	(협력업체)	55,000원	별도계약	-
로열티	가맹본부	275,000원	익월 30일, 자동이체	영업표지 사용을 위한 소멸성 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V-8-1)광고 및 판촉 비용분담기준 참고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VIII-1)교육 훈련의 비용 참고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가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하는 품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가맹사업을 양수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당사로부터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하며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영업표지 사용비,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표지 사용비의 지급은 해당 양도·양수가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330만원, VAT포함)와 교육비(220만원, VAT포함), 계약이행보증금(300만원, 부가세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계약 만료, 일방 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합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의 효과 (계약서 제31조)

- 1)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일방 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합의 해지, 양도 등 어떠한 사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2) 가맹점사업자는 포커스 스테디카페 사업장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철거 및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3) 가맹점사업자는 포커스 스테디카페 브랜드 및 포커스 스테디카페 시스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 (홈페이지, 블로그, 지도정보 등 온라인 상의 가맹점 관련 정보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 운영 매뉴얼, 서면, 파일 등 일체의 자료를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종료 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에 본 계약과 관련한 투자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 5) 계약종료 전 발생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 등과 관련한 금전지급의무는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금전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원래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는 거래 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 전 반드시 당사와 협의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품목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2023년 영업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주요품목은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2023년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는 2023년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서비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의 판매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서비스를 판매/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서비스를 판매/구성하지 않거나, 지정된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명	취급하는 서비스의 제한	위반 시 책임
별첨2 서비스명 참고	별첨2의 서비스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 시 위 표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허락없이 정보공개서 V-1-가) 품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을 귀하의 점포 외에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 등을 고려하고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서비스명과 권장가격은 귀하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별첨2 서비스명 및 권장가격 참고)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스터디카페, 독서실, 북카페	스터디카페 포커스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에 기재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네이버지도-거리측정 기준 귀하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 특수상권이라 함은 대형입시학원 밀집지역, 고시촌, 공무원학원 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등에 상응하는 상권을 뜻합니다.

※ 왕복 4차선이상의 도로, 철길, 강 등에 의해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Commission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년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5.5%	14.5%	0	0

2) 바로 전 사업년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스터디카페 포커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입니다.
- ②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문 제30조 제6항 (계약갱신 거절 사유)

- 6)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본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가맹점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가맹본부와 동종(스터디카페, 독서실, 북카페)의 매장을 경업하는 경우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조문 제30조 (계약기간과 갱신)

- 1) 본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 2) 본 계약의 갱신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4) 가맹본부가 제3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받거나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장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조문 제25조 (가맹점 운영권의 제한)

- 1)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예고한 후 가맹점 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재운영 조건 등 제한해제조건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3회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종(스터디카페, 독서실, 북카페)의 매장을 경영하는 경우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문 제25조 제2항 (즉시해지 사유)

2) 가맹본부는 다음의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당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또는 가맹사업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① 관련법 재정 또는 개정에 따른 사유	제10조
②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수정	

※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30일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2)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220만원, VAT포함)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제한기간	제한지역	경업허가 절차
스터디카페, 독서실, 북카페	가맹계약의 기간	국내 전 지역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스터디카페 포커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연중무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제 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최소 1명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조문 제23조 (감독 및 시정요구)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매장을 점검 할 수 있으며, 영업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파악, 인테리어의 A/S,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을 상시 허용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위 1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은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스터디카페 포커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 광고	50%	50% (전체 가맹점에 안분)	광고 계획 공고 → 귀하에게 광고비 분담내역 통지 →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완납 → 광고 시행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100%	-	
	가맹점 모집광고	100%	-	
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광고일 경우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상황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60일 내외 (점포 개발 및 상권분석 기간 제외)	IV.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14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상권 분석 · 점포개발	- 입지선정 - 경쟁 분석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	1일
점포 실측 및 도면 미팅	- 투자비 산출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2일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45일
지역 홍보	-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21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 영업설비 및 집기 입고 (공사 기간 중 실시)	2일
교육 실시	- 매장 운영교육 실시 - 기기장비 및 KIOSK 조작 (공사 기간 중 실시)	3일
개점 준비	- 초도물품 입고 - 사전예약 등록 및 가오픈 행사 준비 (공사 기간 중 실시)	1일
인허가,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카드 가맹신청	7~15일
개점	- 가맹점 개설 완료 및 영업시작	당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반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판촉행사시 인력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 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 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 내→ 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 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가 2023년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가맹점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하기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기간
광고 지원	온라인 광고	가맹점 월 매출액이 전체 매장 중 최하위인 경우	- 파워블로거 리뷰 활동 - 온라인 광고 시안 제공	4주
간식 지원	간식 지원	가맹점 월 매출액이 전체 매장 중 최하위인 경우	- 간식 지원	연 2회
홍보 지원	지역 맞춤 홍보	가맹점 월 매출액이 전체 가맹점의 직전연도의 월 평균 매출액에 6개월 이상 미치지 못한 경우	- 본사 제작 배너 또는 온라인 광고 시안 제공	4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스터디카페 포커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VAT포함)	교육방식	필수여부
신규교육	서비스 교육	점포운영교육, 고객응대 및 회원 관리방법, 설비 및 집기 관리 방법	3일	220만원	실습	필수
	무인기 사용법	무인결제, 매출결산, 출입통제, 원격출입통제시스템, 매장 원격관리 교육, 학부모 알림 서비스, 마이포커스 리워드, 모바일 연동 프로그램 교육				
	광고 교육	온라인 광고 교육 지역 맞춤 오프라인 홍보 방법				
보수교육	점포운영 및 서비스, 고객관리 교육		필요시 실시	필요시 통지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남	창원대동점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16 3층 302호

2	경남	창원월영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43 동아1차 아파트 상가 지하01호
3	경북	경산정평점	경산시 대학로8길 21 4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

(단위: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영업 기간	비고
683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8,505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 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서비스명 및 권장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3]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4]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4]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5]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점사업자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